



## 한국연금의 신고방법

### 질문

R씨는 캐나다에 오기 전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교직을 그만둔 이후 계속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연금이 R씨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R씨는 캐나다에 온 이후 사학연금을 캐나다에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금이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캐나다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해외소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사학연금의 올바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한국에서 받는 사학연금을 캐나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검토

한국에서 운용하는 공적연금에는 연금 관리 주체에 따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있는데 운용주체만 다를 뿐 연금의 성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한국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여러 세금공제제도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살면서 한국 공적연금을 받을

때에는 이를 캐나다에서도 신고해야 하는데 구체적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외연금(Pensions from a foreign country) 신고방법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에서 받은 연금도 투자, 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의 다른 해외소득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와 다른 국가의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해외연금은 캐나다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다고 신고에서도 빠뜨리는 것은 아닌데, 해외연금을 총소득에 포함하고 같은 금액을 기타 공제항목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해외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도 총소득에 합산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외연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순소득이 낮아져서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해외연금 소득을 신고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연금을 받으면서 외국정부에 낸 세금이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소득 분할공제(Elected split income amount) 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연금의 50%까지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신고하면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연금 신고시 연금공제 항목을 이용하여 \$2,000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조세협약상 한국연금 과세방법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제18조 4항에 의하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전쟁연금, 위로금 및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세협약에서 언급된 한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의 범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세협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비과세되는 연금으

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학연금 등의 기타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세청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제18조 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09.15), 군인연금 및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문서번호 : 법령해석국조-19099, 2016.03.31 및 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같은 종류인 사학연금을 군인연금 및 공무원 연금과 다르게 해석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의 최종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3) 한국연금의 신고방법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모든 기타 공적 연금이 조세협약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신고방법이 간단합니다. 즉, 한국에서 받은 연금을 총소득에 포함하고 같은 금액을 기타 공제항목으로 공제하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사학연금 등의 기타 공적연금이 조세협약상 비과세되는 연금이 아니라고 판정한다면 이를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금소득 분할공제를 이용하여 한국 연금소득의 50%까지를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낮추고 부부가 각각 연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연금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이 있다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여 세금을 줄입니다.

셋째, 경로우대자(Age amount),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의 각종 항목을 이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 한국 정부의 판정

사학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기타 공적 연금 등은 그 성격이 국민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방법도 국민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서는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기타 공적연금 모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상 비과세되는 한국연금의 범위를 국민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등의 기타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

R씨는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R씨가 한국에서 받는 사학연금이 한국과 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학연금이 비과세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때에는 신고방법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씨가 사학연금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캐나다 세법에서 운용하는 연금소득 분할공제, 연금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 공적연금은 그 성격이 국민연금과 동일하고,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의해서도 비과세되므로, 한국 정부에서 사학연금 등의 기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한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상 비과세되는 연금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